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. 2. 6. 선고 2017고정 112,2017고정152(병합) 판결 상해,모욕,상해,특수폭행,폭행,모욕

대 구 지 방 법 원 안 동 지 원

판 결

사건 2017고정112 상해, 모욕

2017고정152(병합) 상해, 특수폭행, 폭행, 모욕

피고인 A

검사 김대현(기소), 이재원(공판)

판결선고 2018. 2. 6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[2017고정112]

1. 상해

피고인은 2017. 4. 3. 12:20경 안동시 B에 있는 'C' 사무실에서 평소 함께 부동산 업무를 하던 피해자 D(여, 53세)과 상가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.

2. 모욕

피고인은 위 일시,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 E,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"씨부랄 년 이걸 대반 매장을 시켜뿌든지 해야지", "이 씨발년아"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[2017고정152]

1. 폭행

피고인은 2017. 3. 21. 10: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같은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밀쳐내고, 피해자가 옆 건물에 있는'H' 안으로 피하자 따라가서 재차 "씨발년아 꺼져라"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.

2. 특수폭행

피고인은 2017. 3. 31. 17:30경 위 C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부동산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나가 사무실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(가로 약 15cm. 세로 7~8cm)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.

3. 모욕

가. 2017. 4. 15. 범행

피고인은 2017.4.15.10:30경 위 C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I 업주 J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"씨발년아, 도청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, 왜 왔어"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나. 2017. 4. 19. 범행

피고인은 2017.4.19.13:10경 안동시 K에 있는 'L' 커피점에서,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 정보를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커피점 업주 M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"씨발 년, 개같은 년, 좆같은 년, 바람난 년, 꽃뱀같은 년"이라 며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4. 상해

피고인은 2017. 4. 18. 08:40경 대구 동구 N 2단지 203동 앞길에서 위 수수료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쌓인 감정이 있어 이를 따지러 피해자를 찾아가서 현장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당겨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.

5. 모욕

피고인은 위 일시,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민, 경비실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"씨발년아, 걸레같은 년아, 개같은 년아, 바람난 년"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
- 1. D,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- 1. 각 수사보고(공연성 관련 확인, 목격자 통신 수사, 참고인 상대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,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)
- 1. 녹취록
- 1. 상해진단서
- 1. 각 고소장
- 1. 상처부위 사진 첨부, 피해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257조 제1항(각 상해의 점), 제311조(각 모욕의 점), 제260조 제1항(폭행의 점), 제261조(특수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폭행의 점) (각 벌금형 선택)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판사 김경수